



제310회 임시회
2012.05.10.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4월 30일
- 제출일자 : 2012년 5월 2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취득과 미원공업고등학교 및 속리산중학교 기숙사 신축 외에 가칭)본성유치원, 가칭)본성초등학교, 가칭)본성중학교 교사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 괴산군에서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소매리 일원에 「백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광초등학교 백마폐교가 편입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취득

(단위 : m², 천원)

| 기관명 | 구분 | 사업명 | 수량 | 금액 |
|------------|----|------------------------|---------------|-------------------|
| 충청북도교육청 | 토지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취득 | 7,352 | 2,640,000 |
| | 건물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건물 취득 | 5,303 | 6,710,000 |
| | 건물 | 충북체고 이전 교사 취득(변경) | 14,730 | 32,419,119 |
| | 건물 | 미원공고 기숙사 취득 | 2,170 | 4,405,700 |
| 보은교육지원청 | 토지 | 속리산중 기숙사 등 확충부지 취득 | 11,008 | 700,000 |
| | 건물 | 속리산중 기숙사 증축 | 1,433 | 2,918,382 |
| 음성교육지원청 | 토지 | 가칭)본성유치원 부지 취득 | 2,546 | 741,141 |
| | 건물 | 가칭)본성유치원사 취득 | 1,168 | 4,228,852 |
| | 건물 | 가칭)본성초등학교 교사 취득 | 9,375 | 15,986,526 |
| | 건물 | 가칭)본성중학교 교사 취득 | 9,272 | 15,431,146 |
| 합 계 | | (10건) | 64,357 | 86,180,866 |

①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 취득

- 신축위치 : 제주시 도두일동 2540-1번지 외
- 부지면적 : 7,352m²
- 신축면적 : 5,303m²
- 취득금액 : 9,350,000천원(토지 2,640,000천원, 건물 6,710,000천원)
- 사유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에 따른 부지취득 및 건물 신축

②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등 증축(변경)

- 증축위치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
- 증축면적 : 14,730m²(당초 5,257m², 총 19,987m²)
- 증축금액 : 32,419,119천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 2012년도 관리계획 승인 : 24,641,211천원
 - 2012년도 변경계획 제출 : 32,419,119천원
 - 합 계 : 57,060,330천원
- 사 유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교사 등 증축

③ 미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신축위치 :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2번지
- 신축면적 : 2,170㎡ / 120명 수용
- 신축금액 : 4,405,700천원
- 사 유 :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전국단위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신축

④ 속리산중학교 시설확충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

- 증축위치 :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22-1번지 외
- 매입부지 : 11,008㎡
- 신축면적 : 1,433㎡
- 취득금액 : 3,618,382천원(토지 700,000천원, 건물 2,918,382천원)
- 사 유 :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기숙사, 음악실, 오케스트라합주실 등 시설확충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

⑤ 가칭) 본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유치원사 취득

- 재산위치 :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1번지
- 부지면적 : 2,545㎡
- 신축면적 : 1,168㎡
- 취득금액 : 4,969,993천원(토지 741,141천원, 건물 4,228,852천원)
- 사 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유입 원아수용시설을 위한 유치원사 신축

⑥ 가칭) 본성초등학교 교사 취득

- 재산위치 :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2-1번지
- 취득면적 : 9,375㎡
- 취득금액 : 15,986,526천원

- 예산현황
 - 2012. 본 예산 : 617,800천원
 - 2012. 제1회 추경 : 15,368,726천원
- 사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유입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교사 신축

7) 가칭) 본성중학교 교사 취득

- 재산위치 :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6번지
- 취득면적 : 9,272㎡
- 취득금액 : 15,431,146천원
- 예산현황
 - 2012. 본 예산 : 579,400천원
 - 2012. 제1회 추경 : 14,851,746천원
- 사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유입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교사 신축

□ 처분

(단위 : ㎡, 천원)

| 재 산 의 표 시 | | | | 추정금액 (천원) | 처 분 시 기 | 처분 사유 | 매 도 요구자 | 비고 |
|---------------|----|------------|-----------|--------------|--------------|---|------------|----|
| 기관명 | 구분 | 소재지 | 수량(㎡) | | | | | |
| 보 광 초 백마폐교 | 토지 | 괴산군 사리면 | 9,680.00 | 687,280 | 2012. 상반기 | 괴산군에서 「백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활성화센터조성」에 따른 처분 | 괴산군 | |
| | 건물 | 중흥리 1-1 | 886.25 | 196,372 | | | | |
| 합 계 (2건) | | | 10,566.25 | 883,652 | | | | |

1) 보광초등학교 백마폐교 현황

- 폐교일자 : 2001. 3. 1.
- 재산위치 :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1
- 재산현황
 - 토지 : 9,680㎡
 - 건물 : 본관교사 외 3동 / 866.25㎡

- 추정금액 : 883,652천원
- 현 용도 : 괴산군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계약 해지

5. 검토의견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 취득

- (가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 취득은 제주시 도두 일동 2540-1번지 외에 7,352㎡(추정금액 2,640,000천원), 건물 5,303㎡(6,710,000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을 원안 가결한 것보다 토지가 3,894㎡(추정금액 1,000,000천원) 추가된 것은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결정이라 생각되며, 다만 추가토지의 구매 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등 증축(변경)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등 증축은 당초 5,257㎡(24,641,211천원)에서 14,730㎡(32,419,119천원)를 더 증축하여 총 19,987㎡(57,060,330천원)로 하는 것으로,
- 이는 체육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 등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 체육시설을 일시에 적정하게 확보하여 엘리트 체육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한 결정이라 판단됨.
- 따라서 체육 엘리트 교육에 맞추어 인재양성교육과정 운영에는 다른 견해가 없으나, 시설비의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심사 여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미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미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2,170m²(4,405,700천원)에 12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전국단위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신축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속리산중학교 시설확충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

- 속리산중학교 시설확충부지로 11,008m²(700,000천원), 기숙사 증축 면적 1,433m²(2,918,382천원)을 부지매입 및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속리산중학교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기숙사, 음악실, 오케스트라합주실 등 시설확충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은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

□ (가칭) 본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유치원사 취득

- (가칭) 본성유치원은 부지면적 2,545m²(741,141천원), 원사 신축면적 1,168m²(4,228,993천원)을 원사 부지매입 및 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유입 원아수용시설을 위한 유치원사 신축을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

□ (가칭)본성초 및 본성중 교사 취득

- (가칭) 본성초등학교는 9,375m²의 교사신축을 위해 당초 설계비로 617,800천원과 건축 및 토목비로 15,368,726천원을 포함하여 15,986,526천원으로 하는 것이며, (가칭) 본성중학교는 9,375m²의 교사신축을 위해 당초 설계비로 579,400천원과 건축 및 토목비로 14,851,746천원을 증액하여 15,431,146천원으로 하는 것이며,

- 이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유입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교사신축으로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

□ 보광초 백마폐교 매각

- 보광초등학교의 백마폐교 매각재산은 1965. 8. 1. 설립 되어 2001. 3. 1. 폐교되었으며, 토지 9,680㎡, 건물 886.25㎡으로 매각 추정금액은 883,652천원임.
- 동 건물은 폐교 된지 11년이 지났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으며, 괴산군에서 추진하는 「백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 활성화 센터조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사용으로 환원된다는 집행청의 의견임.
- 괴산군은 백마폐교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